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(양계 및 오리) 알아보기

농림수산식품부

■ 지원대상농가(양계 및 오리 등)

○ 양계, 오리 : 전업규모 이상 농가

○ 개별 종축장 :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, 종오리장, 정액 등 처리업체

○ 한센인 정착촌 : 전국 9개 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

■ 지원 절차

농가 (사업계획 수립) → 해당 시 · 군 (사업계획 제출) → 해당 시 · 도 (대상자 확정)

■ 사업지원 농가 규모 및 지원액(양계 및 오리)

구분		사육시설 면적당(㎡) 지원상한액	축사 및 축산시설(백만원)			
			보조+융자(전업농)		이차보전(기업농)	
			상한액	대상농가 (축사면적)	상한액	대상농가 (축사면적)
양계	산란계	602천원/㎡	1,150	1,380~2,300㎡	5,000	2,300㎡~
	육계	304천원/㎡	850	1,380~2,300㎡	3,000	6,600㎡~
	육용종계	380천원/㎡	1,150	3,300~6,600㎡	3,000	1회 입란규모 600천개~
	부화장 (육용종계용)	1,260천원/㎡	1,350	1회 입란규모 300~600천개	3,000	2,460㎡
오리	육용오리	304천원/㎡	800	1,230~2,460㎡	3,000	2,631㎡
	종오리	380천원/㎡	1,100	1,665~3,300㎡	5,000	1회 입란규모 200천개~
	부화장	1,260천원/㎡	1,350	1회 입란규모 100~200천개	3,000	1,080㎡

■ 지원 내역

○ 축사, 축사시설, 축산시설(방역시설, 생산성 향상 시설 등) 등
  - 축사시설 : 축사내부의 시설(급이 · 급수 · 전기 · 환기 시설 등)
  - 축산시설 : 축사외부의 시설(방역 · 퇴비장 · 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)

■ 지원 규모

○ 2011. 12. 31이전 축사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
  -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(전업농 상한액의 50% 이내)까지 지원 가능

*전업농 기준 :

• 양계(닭) 30,000수 이상(육용종계 15,000수 이상,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)

• 오리 5,000수 이상(종오리 5,000수 이상, 오리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)

■ 준수사항

○ 소독시설 설치

○ 차량 소독조 설치(농장 정문 입구)

○ 휴대용 방역기 구비

○ 방역 울타리 설치

○ HACCP 인증 의무화

○ 경영기록부 작성

■ 우선지원

○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

○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

○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 농장 지정 농가(전업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)

■ 지원제외

○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은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

○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(축사 포함)은 제외

○ 무허가축사(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)
  -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(시설)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

○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

■ 문의 : 해당 시 · 군(시 · 도) 축산 담당부서